

---

# 입 법 정 보

2018-21호

---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5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7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8
5.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9
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
10.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
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3
12.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3
1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4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5
15.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6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6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7
1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기획재정부).....	18
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18
2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0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1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2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2
2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3
2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4
26.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5
27.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6
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29.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30.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9
3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9
3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0
3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0
35.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1

3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1
37.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병무청).....	31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34

##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3.                      • 마감일자 : 2018. 12. 18.

○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에 재활용과 수질정화 부문을 새로 반영 하며,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 규제가 과도한 자치단체에 대한 기회비용 수요를 일부 가산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체납액 축소노력 제고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도, 지방교부세위원회 예의 외부 전문가 등 참여 확대, 출산장려수요 구간 현실화 등 각종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교부세 제도 운영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위원회 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수를 5명 증가(위원장 1인 포함 15명 → 20명), (시행규칙 제10조의2)

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중 환경보호비 항목의 통계 적 유의미성 제고(시행규칙 별표2)

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폐기물 처리분야 확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과다 규제단체 수요 가산, 체납액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 출산장려수요 구간 현실화 등 자치단 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및 시의성이 감소한 산정항목의 정비 (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고용위기지역 수요 신설, 폐기물 처리대 상에 재활용 및 수질정화 분야 수요 신설, 성장촉진지역 및 접 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 환 경보호· 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으로 인한 자치단체 과도한 기회비용 수요 일부 신설 등

2) 별표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출산장려 관련 적용구간의 현 실화

- 3) 별표6, 세출분야 자체노력 중 지방청사 관리·운영 항목 일몰 규정, 불용액 축소를 위한 수요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세입분야 자체노력 중 체납액 축소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 도입

라.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일부 변경
-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정식 일부 변경
-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2. 3.                      • 마감일자 : 2019. 1. 14.

○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의 범위(안 제4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해양공간 범위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외에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추가하여 규정함.

나.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간 해상경계가 미확정인 해역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간 협의를 권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제8조)

- 1)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 및 이행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등(안 제13조, 제14조, 별표 1)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에 타 법률에 따라 계획이 승인·수립·변경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이가 필요한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양공간적합성협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먼저 협의하도록 함.

마.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 등(안 제16조, 제17조)

- 1)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한 기한 설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특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합성협의 내용을 관련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19조, 제21조)

- 1)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

###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2. 3.                      • 마감일자 : 2019. 1. 14.

○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안 제3조)

- 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의 방법,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방법,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우선순위 결정, 지역협의회 운영 방법, 관리계획의 도면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리계획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나. 관리계획의 승인신청(안 제5조)

- 1)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설명서)와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규정함.

##### 다.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안 제7조)

- 1)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해양공간정보체계

를 활용한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가공·평가를 통한 상층분석의 수행 등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를 정하고,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생태계, 이용·개발현황 및 미래 활용 수요 등을 포함하여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등(안 제8조 및 제9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기본방향,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용도구역별 구체적 행위 관리방안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2)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 해양용도구역의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함.

마. 해양공간적합성협약의 이행의 관리(안 제12조)

- 1) 해양공간적합성협약의 후 협의내용이 해당 이용·개발계획 등에 반영되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약의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함.

바.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목록 등(안 제13조, 제14조)

-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목록을 별표로 규정하고 별도로 해양공간특성평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을 규정함.

사.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안 제15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표준화,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2. 3.                      ● 마감일자 : 2019. 1. 17.

-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안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1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벌크로리는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

나.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1)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유지

5.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2. 4.                      • 마감일자 : 2019. 1. 14.

○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2조의 ① 출자대상기구 목록에 추가 : “중미경제통합은행”

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4.                      • 마감일자 : 2019. 1. 14.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573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 1)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4.      ● 마감일자 : 2018. 1. 14.

- 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30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에서 공동관리하는 경우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 현행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임대주택 등록자료를 직권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료 증액 기준(안 제34조의2)

-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임대료 증액 기준으로 함.
- 2) 다만, 시도내 편차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 요건(안 제35조제2항 신설)

-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등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표준임대차계약서 약정사항 위반 등으로 정함.

다. 임대주택 공동관리 기준 개선(안 제41조)

- 1)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는 임대주택 공동관리에 대하여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 2) 도심 인근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간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시·군 내에서 공동관리를 허용함.

라. 임차인대표회의 의무 구성단지 등(안 제42조)

- 1) 민간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 중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 2) 임차인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반기 1회 이상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비 근거 및 절차(안 제50조)

- 1)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의 일체 조사 및 오류사항 정비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 지자체는 오기, 기재누락, 소유권 불일치 등 오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직권변경 및 말소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바. 과태료 부과 면제근거 신설(별표 3)

- 1)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4.                      ● 마감일자 : 2019. 1. 14.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시 임차인 사전 동의(안 제18조)

- 1)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면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묵시적 계약인 경우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안 제19조)

- 1) 임대차 증액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함.

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안 별지 제24호 서식)

- 1)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일원화하고, 임대료 증액기준과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항 등 법령 개정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반영하는 등 내용을 정비함.

## 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2. 5.                      • 마감일자 : 2018. 12. 19.
-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 1)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에 포함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10.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2. 6.                      • 마감일자 : 2018. 12. 28.
- 국립공원은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국립공원관리공단명칭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제2조)
    - 1)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제

명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으로 변경

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추가(안 제9조제3호)

- 1)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에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 을 추가

## 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6.                      • 마감일자 : 2018. 12. 13.
- 궁 능의 수리 복원 활용, 정책 수립 조정 등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궁능유적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궁 능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복원 정비 및 향상된 궁 능 관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에 새로 개관하는 수장보존센터( '18.12., 청주) 운영을 위한 인력 12명(4급 연구관1, 5급2, 7급2, 8급3, 연구관1, 연구사3)을 증원하려는 것임.

## 12.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9. 1. 17.
- 성 비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공포 2018.10.16., 시행 2019.4.17.)됨에 따라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피해자가 있는 주요 비위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징계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성 비위 피해자에 징계처분결과 통보(안 제19조제3항내지제5항 신설)
    - 1) 징계처분권자(또는 징계처분제청권자)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혐의자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2)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요청 시기·방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넓게 인정하되, 세부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 3)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징계처분결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4)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공개금지 규정
- 나.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11조의2 신설)
- 1)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 2)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관하여 징계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주요 비위 징계기준 신설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개정)
- 1)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성 비위·갑질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비위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 라.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7조 제6항 제8호 나목. 개정)
- 1)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 1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9. 1. 17.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강화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과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주요 비위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제1호 자목 신설)
    - 나. 주요 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제1호 차목 신설)

- 다. 징계감경제외대상 비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제8호·제9호 신설)
  - 1) 신설되는 징계기준인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갑질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 라.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4조 제2항 제4호 개정)
  - 1)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9. 1. 17.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2 제3항 신설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함
- 주요내용
  -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감면 임대료율 및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의6 신설)
    -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및 감면율의 범위를 정함. (안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의6제3항 신설)
    - 3) 국·공유재산 감면 대상이 되는 신·증설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15조의6제4항 신설)
    - 4) 국·공유재산 감면 신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도록 함. (안 제1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

15.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9. 1. 16.

○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 이라함)이 등록신청 및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심사에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2조)

1) 법률구조법인 심사에 불필요한 임원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을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나.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4조)

1)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명칭, 목적,사무소 소재지 등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9. 1. 21.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소 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고,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고, 판결 시 부과 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등 집행을 모두 종료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등록의 면제신청 시 신청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신청자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범죄경력 등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8. 1. 16.
-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7호 신설)
    - 1)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일반요율)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인하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활용을 지원.
  - 나. 물납증권의 물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 구체화(안 제47조의2 신설)
    - 1) 법 제4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과 물납증권 처분 당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가진 주식수를 합한 수가 그 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보다 많은 법인으로 구체화
  - 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안 제55조제1항제10호, 제3항 제6호 신설)
    - 1)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다 용이하게  
영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1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9. 1. 16.
- 서민·중소기업 등 영세한 국유재산 점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  
해 변상금이 확정부과 된 후에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신청서  
및 징수유예신청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안 제49조제4  
항 후단 신설)

## 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9. 1. 16.
-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  
전환을 확대하고, 총괄청이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특별회계·기  
금 소관 국유재산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재위탁 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용료, 매각대금 등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 원금이 연체료·이자  
등에 우선하여 충당되도록 징수순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사용예약 제도 도입(안 제2조제12호,  
제40조의2 신설)
    - 1)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은 용도폐지 후 총괄청  
으로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관서가 이를 용도폐지 하지  
않고 유휴 상태로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 2) 중앙관서의 장이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는 경우 사용예약  
을 통해 다른 행정목적에 필요시 해당 재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활성화 도모.

나. 회계·기금 간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확대(안 제17조제3호, 제26조제1항6의3호 신설)

- 1) 현행 규정상 회계·기금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관리전환은 유상(有償)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無償) 전환은 재산가액에 비하여 감정평가 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회계·기금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이 제약.
- 2)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유연성 제고.

다. 특별회계·기금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사무 재위탁 허용(안 제42조제2항)

- 1)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의 경우 관리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소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해소, 유휴재산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 총괄청이 특별회계·기금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라. 사용료·매각대금 등 일부납부시 원금 우선징수(안 제73조의4 신설)

- 1) 현행규정상 사용료·매각대금 등 일부납부 시 징수순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가 채권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채권법」에 따라 연체료·이자가 원금에 우선하여 충당.
- 2) 국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등 일부납부 시 원금이 연체료·이자에 우선하여 충당되도록 국유재산 관련 채권의 징수순위를 명시함.

## 2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9. 1. 17

○ 항공산업 발전에 따라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을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기반으로 통일하고, 항공정비사 양성과정의 국제 표준화와 비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심사 절차 간소화 및 전문교육기관 학과교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955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됨에 따라 훈련운영기준 변경승인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고, 안전용어 순화 및 불합리한 차별용어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규제 합리화

- 1) 대형항공사의 조종사와 달리 정기노선, 지역, 공항을 운항하지 않는 비사업용 국외운항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지식·기량심사 범위를 간소화하고, 정기심사 주기 완화(1년→2년) 및 운항자격심사 유효기간의 만료기간을 1개월 연장함(안 제138조, 제139조, 제142조, 제143조 및 제145조)
- 2) 운항자격심사 수수료를 심사 유형별로 인하하고, 심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운항자격심사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표 47 제21호, 별지 제67호서식)

#### 나. 항공정비사 양성과정 및 항공신체검사기준 국제 표준화

- 1) 대형화·첨단화된 항공기의 정비품질 제고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비지정 교육기관 이수자에 대한 실습경력과 항공기술요원 양성 과정을 삭제함(안 별표 4)
- 2) 임신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기준을 임신 초기부터 임신 34주까지로 구체화함(안 별표 9 제6호)

####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범위(별표 5)

- 1)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에

대한 자격증명 시험범위를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기반으로 통일함  
라. 전문교육기관 안전관리 체계화, 학과교육 개편 및 학과교관 자격  
요건 규제 합리화 등

- 1)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  
하여 훈련운영기준 변경승인 절차 및 지정서 발급 시 발급번호  
기입란을 마련함(안 제104조의2, 별지 제58호, 제58의3호서식)
- 2) 자가용·사업용조종사, 계기비행증명 및 항공교통관제사 학과교  
육 내용을 항공종사자 표준교재기반으로 통일함(별표 12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8호)
- 3)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항공법규 등  
공통과목에 대한 학과교관의 자격요건을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  
지자 위주에서 실무경험(교육경력 포함) 소지자 등으로 인정범  
위를 확대함(별표 12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
- 4) 사업용조종사 과정 및 형식한정 추가과정의 실기교관 및 실기시  
험관에 대한 초급·선임 조종교육증명 자구 수정(별표 12 제2호  
및 제5호)

마. 기타 자구수정 등(안 제104조, 제111조, 제218조, 제297조, 별표 9  
제6호, 별표 26, 별표 35 제2호나목, 별표 47 제20호 나목 삭제,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

- 1) 안전용어 순화(안전벨트→안전띠), 차별용어 순화(정신지체→지  
적장애) 및 입법오류 등 자구수정

##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 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8. 12. 13.

-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  
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 등급별로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  
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금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  
이 부가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된 보상금 및 수당의 70%로 연

동하여 인상하고 재해부상군경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며, 간호가 필요한 재해부상군경의 간호수당을 3.5% 인상하고,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 22.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8. 12. 13.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씩 인상하고, 보상금 지급액이 낮은 대통령표창 유족에 대해 10만원을 추가 인상하며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8. 12. 13.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전·공상군경 등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4·19혁명공로수당 및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만3천원을 인상하며,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 2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2. 10.
- 마감일자 : 2019. 1. 21.

○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대한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한 경력 등을 갖춘 경우 특수교사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여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어린이집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미 실시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추가(안 제21조의3 개정)

- 1) 기관 지정 이후 3개월 이상 일시보육 서비스 미제공하는 경우,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휴업 등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함

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위임 규정(안 제21조의8 개정)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수당 지원 대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 추가 함

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특수교사 포함(안 별표1 개정)

-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추가함

라. 영유아의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어린이집 과태료 부과 면책 요건 규정(안 별표2 개정)

- 1) 어린이집의 원장이 3회 이상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음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

## 2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2. 10.      • 마감일자 : 2019. 1. 21.

○ 최근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 사망사고 등의 발생으로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교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던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보수교육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는 경우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대상 기준금액을 낮춰 공표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의 유용 금지 등을 명시하고자 하며,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총 운영 중단의 기간 규정(안 제36조제1항)

- 1)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총 운영 중단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

나.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 금액 변경(안 제39조의2)

- 1)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금액을 보조금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다.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안 별표 1)

- 1)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인 50m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화

라.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완화(안 별표 1)

- 1) 가정어린이집에는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

마. 장기 보육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안 별표 3 및 별표 7)

- 1) 보육현장 조기 적응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간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한 원장·보육교사는 미종사기간별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1일 보육실습 기준 규정(안 별표 4)

- 1) 종일 보육과정 동안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보육실습시

간을 8시간으로 정함

사. 어린이집 수입의 유용 금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비용 지출의 원칙 명시(안 별표 8)

- 1) 어린이집 운영자와 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집 수입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지출 원칙 명시

아.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관리(안 별표8)

- 1)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차량의 동승 보육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

자. 어린이집 인가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

- 1) 제5조 개정( '15.1.28. 개정)으로 변경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원장의 인적사항 관련 사항을 인가증 서식에서도 삭제하여 현행 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차.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의 첨부 서류 연도 정비(안 별지 제 19호 서식)

- 1) 제39조의3 개정( '18.2.28.)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향후 5년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위탁신청서 서식의 첨부 서류 연도를 5년으로 정비

## 26.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11.      • 마감일자 : 2019. 1. 21.

-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시험의 기준점수 마련 등 외국어번역 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3호)

- 1)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로 조문 수정

- 나.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마련(안 별표 2)
- 1)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 2급·3급자에게 텡스(TEPS)의 쓰기시험 기준점수를 일반응시자에게 적용하는 점수(71점 이상)보다 10% 하향 조정하여 64점 이상으로 적용함

## 27.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11.      ● 마감일자 : 2019. 1. 21.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면제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한 행정사자격증재발급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사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분실한 경우 예외규정을 명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확인 (안 제3조제3항)
    - 1)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 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근거 명시(안 제6조제3항)
    - 1)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조문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다.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 (별지 제9호 서식)
    - 1)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인 자격증 사본 및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사 업무 폐업신고서” 서식 보완

## 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2. 11.      • 마감일자 : 2019. 1. 21.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을 적용하고, 상하 분위간 1인당 평균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형평성 제고를 위해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별표3)
  - 나.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별표3)

## 29.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2. 11.      • 마감일자 : 2019. 1. 21.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추가
    - 1)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의 범위가 기존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확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상 구체적인 의학적 시술의 종류를 열거
  - 나. 환자가족 제외 사유 변경
    - 1)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가족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의 기간 기준을 1년이상으로 완화

### 30.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2. 11.      • 마감일자 : 2019. 1. 21.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및 호스피스 신청 시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 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첨부 서류 일부 문구 삭제
    - 1) 진료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삭제
  - 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및 “말기환자등”의 용어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변경
    - 1)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호스피스 이용 철회권 소재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의미 명확화
  -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확인 관련 서식 변경
    - 1)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기록열람신청서

###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2. 11.      • 마감일자 : 2019. 1. 21.

#### ○ 주요내용

- 가. 공공직업훈련 설치 협의·승인 요청시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1호 신설)
- 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시 통상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통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제6항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등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여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 제2항 삭제)

### 3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2. 11.      • 마감일자 : 2019. 1. 21.

#### ○ 주요내용

- 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에 대한 훈련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제1항 제7호 신설)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시설의 연면적과 주된 강의실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구체화함(안 제24조 제1항 제2호)
- 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학교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계획서와 함께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 라. 기능대학의 탄력적 학사운영 등을 위해 다기능기술자과정(학위과정)의 졸업이수학점 규정을 학칙으로 이관함(안 제40조 제1항)
- 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불이행시 위반행위의 다음 차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1] 1. 일반기준 라항 신설)

- 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및 경력 등은 훈련교사의 직종과 관련되어야 함을 명시함(안 [별표 2] 비고)

### 3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2. 12.      • 마감일자 : 2018. 12. 17.
- 대국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 기능을 추가하고,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 일부 직급의 정원 60명(4급 또는 5급 9명, 5급 14명, 6급 24명, 7급 13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지정폐기물 관리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정원 각 1명(각 9급 1명)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12. 12.      • 마감일자 : 2019. 1. 21.
-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공증인법에 명시하려는 것임(법제처의 2018년도 제3차 신고제 합리화 사업 내용에 포함)
- 주요내용
  - 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안 제15조의3 제2항)
  - 나. 안 제15조의3 제2항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5조의10 제2항 등)

### 35.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2. 12.      • 마감일자 : 2018. 12. 17.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18.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 3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12.      • 마감일자 : 2019. 1. 21.
-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계수 시설물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안 제3조제3항)
    - 1) 국민의 혼잡통행료 납부편의 제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함
  - 나. 건축물 용도별 분류 조정(안 별표4)
    - 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여 시설물의 용도 분류를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함

### 37.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 예고일자 : 2018. 12. 13.      • 마감일자 : 2019. 1. 21.
-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지무요원 배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 1)

1) 사회복지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기관분류변경 및 명칭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추가(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1) 생계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함.

다.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1) 의무·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상황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병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1)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신청이 ‘민원24’에서 ‘정부24’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함.

###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13.      ● 마감일자 : 2019. 1. 22.

○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여객법시행령 제21조에는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로 면허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등록사업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불분명.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으로 출·퇴근이 곤란하므로 전세버스 노선운행 허용을 통해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며, 전세버스 노선운행 난립 방지 등을 위해 노선운행 허용 범위 명확화 필요

○ 주요내용

가. 음주여부 확인 방식 및 기록 등

- 1) 신속·정확한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기기의 정상작동상태 확인·점검 후 측정하도록 규정
- 2) 운송사업자가 정기적 측정결과 일괄 출력 등을 통해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음주측정기록 관리 대장 비치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

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 등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내용(등록의 종류·일자, 등록번호)을 명확히 규정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권자도 전세버스 노선운행 계약을 허용하고, 노선운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13.      • 마감일자 : 2019. 1. 22.

○ 범죄 예방 및 사고 과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의 구체화를 위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를 사용해야 되나 전세버스운송사업 교통안전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44조의4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과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의 구체화를 위임

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를 사용해야 되나 전세버스운송사업 교통안전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44조의4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 필요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2. 13.      ● 마감일자 : 2018. 12.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시행령에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과태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과태료 관련 규정의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시행령 제65조 제1항 개정 및 별표 5 신설)
    - 1) 공정거래법은 5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 중 공시의 무위반, 기업결합신고 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음. 따라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단,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이나 고의적인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법상 상한인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 나. 과태료 면제조항 정비(시행령 제65조 제2항 개정)
    - 1)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함.